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성명서		
	보도일시	2019. 02. 25. 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류하경 활동가(법률대리인)	010-9109-8630
	배포일시	2019. 02. 25. 월	총 6매 (별첨 0건)

한유총 불법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습적인 휴·폐원은 ‘아동학대범죄’ 정치하는엄마들, 법적대응 할 것!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2월 25일, 월)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조치를 규탄했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병을 발견했는데 치료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러려면 사립유치원 감사를 왜하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돈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에 놀라고 또 놀란다. 한유총에 묻는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교육을 위해 백 분의 일, 천 분의 일의 노력이라도 정녕 기울여 봤는지. 입에 침도 한 방울 안 바르고 ‘사유재산 몰수’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는 당신들은 정녕 교육자인가? 장사꾼도 아닌 사기꾼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다.

□ 교육부는 이미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고, 공정위·국세청·경찰청·교육청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은혜는 초법적 망언과 국민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오늘 자로 배포했다. 한유총이야 말로 망언과 협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온갖 불법 행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유아교육 현장에 놓인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대신해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오늘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으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동법 66조에 의거 한유총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재판 결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휴·폐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정된 기간 안에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제2항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별도로 동법 제34조에 따라 불법 휴·폐원 전부를 형사고발할 것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기습적인 유치원 휴·폐원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로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다. 헌법 제34조에 의해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은 특히 국가의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서 유치원의 이익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즉 한유총은 사유재산추구권 또는 집단행동권을 이유로 아동에게 피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과 한유총 중에 누가 초범인지 불법인지는 정치하는엄마들과 법정에서 다투어보자.

□ 한유총은 거창하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운운하고 있지만,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학부모부담금의 현금납부 또는 설립자(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불법과 부정회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뉘앙스에 불과하다. 또한 교비회계로 성인용품, 명품백, 외제차를 구입하기를 멈추기 싫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반박할 가치도 없다. 지난 5년간의 유치원 감사적발 내용과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백태가 드러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예전처럼 사립유치원을 당신들 맘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 왜냐면 유치원은 사설학원과 달리 교육기본법에 따른 명백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한 때는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라고 바꾸자고 주장했던 게 바로 한유총 자신이지 않은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싶을 때는 유치원도 학교라고 부르짖던 자들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지키라는 요구 앞에서 개인사업자라고 항변한다. 한유총의 입장문은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받는 한 그것 취지를 온라인회계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에듀파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차라리 재무회계규칙을 거부하면 모를까.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비리를 계속 저지르고 싶은데, 걸리기는 싫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한유총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 에듀파인으로 비리근절한다는 교육부도 과대광고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듀파인 도입하면 사립유치원 다 망한다는 한유총의 가짜뉴스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아닌가? 에듀파인은 기초적인 장치이다. 사립유치원이 수입지출 기록을 에듀파인에 등재할 경우 성인용품, 외제차, 명품백, 술, 자녀 사교육비, 단란주점 등 유아교육과 완전 무관한 지출을 금지할 수는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조차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유총은 비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더라도 진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물감사, 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예컨대 성인용품이 아닌 대형 텔레비전을 구입했다면 그것이 유치원 교육실에 걸렸는지 설립자 안방에 걸렸는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탬버린을 개장 1만원에 사다면 시세보다 비싼 건 아닌지, 아니면 전문가용 수제 탬버린인지 실물을 봐야할 것이 아닌가? 일가친척이 교직원으로 등록돼있으면, 제대로 출근하고 근무하는지 봐야하고 무슨 업무를 하기에 월 900만원을 수령하는지 업무내용도 봐야하지 않나? 에듀파인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 냥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 한유총이 이 정도로 죽는 시늉하는 것은 어쩌면 다가올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쇼일지 모른다.

□ 2월 11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0여개 유치원이 폐원 추진 중이다. 에듀파인 도입을 염두에 둔 ‘떡튀 폐원’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에 제안한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조에 의해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이 폐원 신청 시 제출한 재산처리 계획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말고, 모든 폐원 유치원에 대해서 종합감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부당집행 한 국가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을 환수·보전조치하고, 조세 회피 및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과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바이다.

2019년 2월 25일

정치하는엄마들

※ 관계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6. 3. 29.>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제3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6. 5. 29.>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19. 02. 25. 한유총 사무실 현관에 성명서 게시



2. 2019. 02. 25. 한유총 사무실 현관에 성명서 게시



